##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79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이수진・박홍배・이기헌

민병덕 · 정성호 · 임미애

이건태 · 김문수 · 송옥주

이원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법률 제 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기관장	제18조(구성) ①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26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		
	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		
	과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